

제 호

해양동물전문구조 · 치료기관지정서

기관명

성 명(대표자)

생년월일

소재지

전화번호

구조 · 치료대상
해양동물

유효기간

지정조건

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동물전문구조 · 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(시 · 도지사)

직인